

#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

2000. 2. 18  
교육사회위원회

1. 제 안 자 : 충청북도지사 제출

## 2. 제안및회부일자

- 제 안 : 1999년 12월 20일 제출
- 회 부 : 1999년 12월 20일

## 3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현실 불부합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

## 4. 주요골자

- 기금출납원의 직명변경 (제13조 제1항)
  - 가정복지담당사무관 → 경로복지담당사무관

## 5. 검토의견

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

-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 시행에 따라 기금출납원의 직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